

과실 소견서

1. 사고개요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1) 일시 : 0000-00-00-00:00
- 2) 장소 : 교차로 내

나. 사고관련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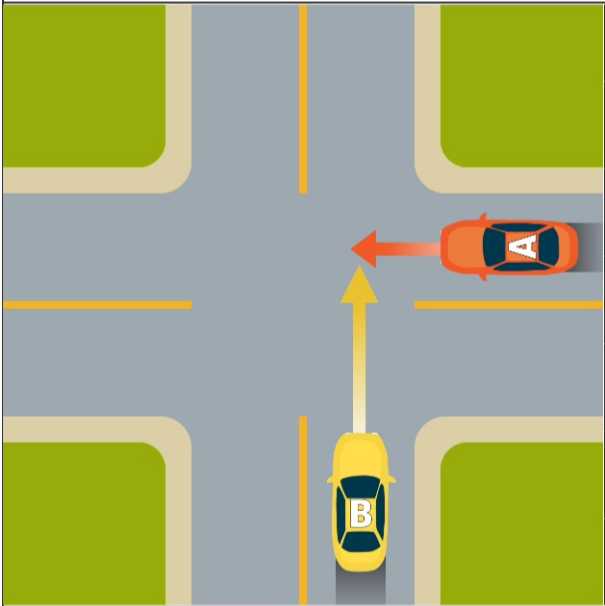
- 1) 자차 차종 : A차량 세단
- 2) 대차 차종 : B차량 세단

다. 발생개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쪽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라. 사고 검토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차12-1(다)유형으로 판단 되며 A차량에 해당합니다.
과실 비율은 80%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차12-1(다)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쪽) - B 선진입		
	A : 우측도로에서 직진 (후진)	B : 좌측도로에서 직진 (선진입)	
수정요소		A	B
	과실비율	80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3항, [제31조] 1항, 2항에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및 서행·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 우측도로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개요

본 사고는 B차량이 신호기 없는 교차로의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 부위는 A차량 좌측 후면, B차량 전면부로 확인됩니다. 사고 당시 양 차량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과실비율 구조는 동일 쪽 교차로에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경우를 전제로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영상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는 A차량의 선진입 상황에 해당합니다. 즉 A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과 중인 상태에서 B차량이 후행 진입하였고, 충돌 부위가 A차량 좌측 후면과 B차량 전면부라는 점은 A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시점에 B차량이 그 측후면을 충격한 형태와 정합적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동시 진입을 전제로 한 제26조 제3항(우측 도로 우선)보다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한 제2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는 사안으로 분석됩니다. 이 경우 선진입하여 이미 교차로 내를 통과 중이던 A차량에 진로 우선권이 인정되며, 후행 진입한 B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A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양 차량은 모두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임에도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장소이므로, 양 차량 모두 일시정지 및 좌우 안전 확인 의무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A차량은 선진입한 차량으로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B차량은 후행 진입하면서 제동 타이밍이 늦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에 있어 B차량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B차량은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 일시정지 없이 후행 진입하였고 제동 타이밍이 늦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상대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A차량은 선진입한 차량으로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주행 속도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의무 소홀이 두드러지지 않으나,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점에서는 안전 확인 의무가 일부 소홀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고 종합 분석

본 사고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로부터 선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A차량의 좌측 후면을, 좌측 도로에서 후행 진입한 B차량의 전면부가 충격한 사고로 분석됩니다.

본 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과실비율 구조는 동시 진입을 전제로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차량(A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영상 분석 결과 A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6조 제1항(선진입 차량 우선)이 우선 적용되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즉 A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 중인 상태에서 B차량이 후행 진입하였고, 충돌 부위(A차량 좌측 후면·B차량 전면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A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좌우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 일시정지 없이 후행 진입하면서 제동 타이밍마저 늦었던 B차량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차량 역시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좌우 안전 확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진입한 점에서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충돌 부위가 A차량 좌측 후면, B차량 전면부라는 점은 A차량의 회피가능성 측면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하여 후면부가 충돌된 점을 감안하면, A차량 입장에서 후행 진입하는 B차량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A차량의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A차량의 무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A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점에 B차량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선진입 후 통과 과정에서 회피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선진입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 및 시야 제한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행 진입한 B차량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며, A차량은 일시정지 의무 소홀에 따른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회피가능성 쟁점에 따라 무과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병존하는 사고로 판단됩니다.

본 소견은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며, 최종적인 과실 비율의 확정 및 책임 판단은 사법기관 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검을 부기입니다.

이에, 도표 차12-1(다)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 적용 및 분석 소견을 드립니다.

A차량

- 1. 현저한 과실 +10
-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 없음, 충돌 전 제동 늦음

B차량

- 1. 기본 과실

상기 수정요소 및 분석 내역을 종합하여 A차량 80% B차량 20%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효과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 상호간
완만한 합의를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자격번호 :

별첨1_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본 사건 과실비율 산정 근거자료 ※

- 의뢰 운전자의 사고접수 내역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고당시 영상 자료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진 자료
- 사고지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위성지도 및 로드뷰

본 소견서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판결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교통사고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된 소견서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증거자료(CCTV, 당사자 증언, 수사기록 등)에 의해 본 소견서의 결론 및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국적인 가해자/피해자 확정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